

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(제104조의3 관련)

1. 삭제 <2015.12.22.>
2.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.
3.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.
4.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 및 기준(원격측정기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)을 준수하여야 한다.
5. 봉인이 되어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(촉매장치·가버너 등)을 정비한 때에는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.